

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

「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3년 11월 9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
2. 발 의 자 : 지 민 의원
3. 제정이유
 -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화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시행계획 수립, 실태조사(안 제4조, 안 제5조)
- 사업의 추진 및 지원(안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, 업무의 위탁(안 제7조, 안 제8조)

5. 관련법령 :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3. 11. 9. ~ 2023. 11. 14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4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
조례안 1부. 끝.

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에 따라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
3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

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의 추진 및 지원)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, 경력, 학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
2. 취·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
3.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
4.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5.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
6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

기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, 기업,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.

제8조(업무의 위탁)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